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32

발의연월일: 2021. 2. 25.

발 의 자: 강선우·오영환·이규민

황운하 • 박홍근 • 박성준

홍정민 · 서영석 · 이성만

홍성국 • 이수진 • 위성곤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권리 보호, 아동학대 예방,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 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.

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
절차) ① (생 략)	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	
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	
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	
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	
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	
한다.	
1. ~ 25. (생 략)	1. ~ 2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에
	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
	수행하는 사람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